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6-056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11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인

1. 건　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통지 공시송달
2. 근　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	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유○환	74.02.26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통보일자에 방문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○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충북 청주시 흥덕구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06.11. ~ 2026.06.26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복지센터 진재원(Tel. 043-230-676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